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0

# 광 주 고 등 법 원

## 제 주 제 1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(제주)2023누150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A |
| 피고, 피항소인 | ○○○시장 |
| 제 1 심 판 결 | 제주지방법원 2023. 8. 22. 선고 2023구합89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24. 3. 20. |
| 판 결 선 고 | 2024. 4. 24. |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2. 7. 5. 원고에게 한 ○○○시 B 지상 건물의 1층 54.97㎡ 및 2층 29.64㎡에 대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 합계 12,940원의 부과처분 중 위 건물의 2층 29.64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0

# 이 유

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판사 강○○

판사 강○○